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린이 자동차 안전장치 규제

## 8세 이하, 보조의자 착석 실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올해부터 8세 이하 어린이는 무조건 보조의자에 착석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시 475달러의 벌금과 벌점이 주어진다. <편집자>

캘리포니아 주는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 8세 이하 어린이가 자동차 탑승 시 어린이용 보조의자(Booster Seat)에 착석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을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6세 이하 혹은 약 27kg 미만의 어린이만 보조의자를 사용하도록 했다. 캘리포니아 주 교통안전국(OTS) 관계자는 "새로운 법은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약 1100만명 이상의 어린이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어린이를 보조의자에 앉히는 것은 사고 당시 어린이의 생존율을 45%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8세 이하지만 키가 약 144cm 이상인 어린이의 경우는 무릎·어깨벨트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뒷좌석에 앉아야 한다. 이미 보조의자를 사용하는 8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에는 이전에 쓰던 보조의자를 계속 사용해도 된다. 새로 보조의자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부스터 쿠션타입(등받이 없이 아이의 앉은키를 높여줘 차량 안전벨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무릎벨트는 어린이의 배가 아닌 골반 뼈에 걸치도록 낮게 해야 하며, 어깨벨트는 가슴에 두르도록 해야 한다. 어깨벨트가 어린이 등 뒤쪽에 있다면 부스터를 사용하여 벨트가 가슴에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 벨트 미착용 위반 시 운전자는 약 475달러 가량의 벌금과 법률 위반에 따른 벌점이 주어지게 된다. [23]



글\_ 김가현 기술표준원 국제표준협력과 전문위원 + 자료\_ ASTM News

## 최갑홍 전지산업협회 부회장, ASTM 이사로 선출



최갑홍 한국전지산업협회 부회장이 미국재료시험학회(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이사로 선출됐다. 최갑홍 부회장은 한국표준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또 2011년부터는 한국전지산업협회에서 부회장직을 맡았다. 현재 48개의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Cooperation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 이사회 의장과 공군정책개발위원 명예고문, 중국품질질량협회(CAQ) 명예고문으로도 활동 중이다.